|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1)**법석[2011] 4호《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1)》은 2011년 2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11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2월 28일 2010년 4월 29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인민법원이 판결한 국가배상안건 중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유관문제 해석은 아래와 같다.**제1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국민, 법인과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가 2010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거나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발생하여 2010년 12월 1일 이후까지 지속된 경우, 개정된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제2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가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개정 전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단,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개정된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1) 2010년 12월 1일 이전 이미 배상청구인의 배상청구를 수리하였으나 아직 배상결정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2) 배상청구인이 2010년 12월 1일 이후 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제3조** 인민법원이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수리하였으나 심리판결이 나지 않은 국가배상 확인 안건의 경우, 심리를 지속해야 한다. **제4조** 국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조사(侦查), 감찰 (检察), 심리(审判)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구치소, 감옥관리기관에 대해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결정되고 법률효력이 발생한 직무 위법행위 미확인 법률문서에 불복하고, 개정전의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채로 제소하여 유권기관의 권리침해 판결이 나지 않아, 직접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5조** 국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2010년 12월 1일 이전 법률효력이 발생한 배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제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처리 시, 개정 전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한 국가배상법이 새로 포함시킨 배상항목 및 표준에 해당하는 제소를 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6조** 인민법원이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확인판결, 배상결정에 오류가 있어 다시 심사처리해야 함을 발견한 경우, 개정 전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제7조** 배상청구인이 조사(侦查), 감찰 (检察), 심리(审判)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구치소, 감옥관리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17조 제(1), (2), (3)항, 제18조 규정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 과정 종결 후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배상청구인이 증거증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미결된 형사안건과 무관한 경우 (2) 형사안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198조 규정에 의거하여 미반환한 재산 또는 반환되었다고 판단된 재산에 손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배상청구인은 인민법원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38조 규정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민사, 행정소송과정 또는 집행과정 종결 후 배상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소송채택에 방해가 되어 강제 제거 조치한 정황을 제외한다. **제9조**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에 의거하여 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배상결정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원 배상결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검찰원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2010년 12월 1일 이후에 결정한 배상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반드시 재심사를 결정해야 하며, 원 배상결정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본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若干问题的解释（一）**法释〔2011〕4号《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若干问题的解释（一）》已于2011年2月1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1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3月18日施行。二○一一年二月二十八日 为正确适用2010年4月29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修正的《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对人民法院处理国家赔偿案件中适用国家赔偿法的有关问题解释如下：**第一条**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行使职权侵犯公民、法人和其他组织合法权益的行为发生在2010年12月1日以后，或者发生在2010年12月1日以前、持续至2010年12月1日以后的，适用修正的国家赔偿法。**第二条**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行使职权侵犯公民、法人和其他组织合法权益的行为发生在2010年12月1日以前的，适用修正前的国家赔偿法，但有下列情形之一的，适用修正的国家赔偿法：（一）2010年12月1日以前已经受理赔偿请求人的赔偿请求但尚未作出生效赔偿决定的；（二）赔偿请求人在2010年12月1日以后提出赔偿请求的。**第三条** 人民法院对2010年12月1日以前已经受理但尚未审结的国家赔偿确认案件，应当继续审理。**第四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行使侦查、检察、审判职权的机关以及看守所、监狱管理机关在2010年12月1日以前作出并已发生法律效力的不予确认职务行为违法的法律文书不服，未依据修正前的国家赔偿法规定提出申诉并经有权机关作出侵权确认结论，直接向人民法院赔偿委员会申请赔偿的，不予受理。**第五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在2010年12月1日以前发生法律效力的赔偿决定不服提出申诉的，人民法院审查处理时适用修正前的国家赔偿法；但是仅就修正的国家赔偿法增加的赔偿项目及标准提出申诉的，人民法院不予受理。**第六条** 人民法院审查发现2010年12月1日以前发生法律效力的确认裁定、赔偿决定确有错误应当重新审查处理的，适用修正前的国家赔偿法。**第七条** 赔偿请求人认为行使侦查、检察、审判职权的机关以及看守所、监狱管理机关及其工作人员在行使职权时有修正的国家赔偿法第十七条第（一）、（二）、（三）项、第十八条规定情形的，应当在刑事诉讼程序终结后提出赔偿请求，但下列情形除外：（一）赔偿请求人有证据证明其与尚未终结的刑事案件无关的；（二）刑事案件被害人依据刑事诉讼法第一百九十八条的规定，以财产未返还或者认为返还的财产受到损害而要求赔偿的。**第八条** 赔偿请求人认为人民法院有修正的国家赔偿法第三十八条规定情形的，应当在民事、行政诉讼程序或者执行程序终结后提出赔偿请求，但人民法院已依法撤销对妨害诉讼采取的强制措施的情形除外。**第九条** 赔偿请求人或者赔偿义务机关认为人民法院赔偿委员会作出的赔偿决定存在错误，依法向上一级人民法院赔偿委员会提出申诉的，不停止赔偿决定的执行；但人民法院赔偿委员会依据修正的国家赔偿法第三十条的规定决定重新审查的，可以决定中止原赔偿决定的执行。**第十条** 人民检察院依据修正的国家赔偿法第三十条第三款的规定，对人民法院赔偿委员会在2010年12月1日以后作出的赔偿决定提出意见的，同级人民法院赔偿委员会应当决定重新审查，并可以决定中止原赔偿决定的执行。**第十一条** 本解释自公布之日起施行。 |